



대구대학교와 육군 제8919부대의 학군협력협약서



대구대학교와 육군 제8919부대(이하 ‘양 기관’이라 한다)는 상호 보유한 인적·물적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구성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복지 증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군협력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업무범위와 역할분담, 상호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향후 필요한 협력관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·성실·상호존중의 원칙 준수)

양 기관은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,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밀히 협조한다.

제3조(협력사항)

본 협약서에 의해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대구대학교는 다음 사항을 협력한다.
 - 가. 장병 및 군 가족에 대한 학위취득, 위탁교육, 평생교육 활성화 협조
 - 나. 심리상담 교육에 관한 사항
 - 다. 직장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항
 - 라. 수목 및 조경관리를 위한 협력
 - 마. 각종 행사시 동아리 등 상호교류
2. 육군 8919부대는 다음 사항을 협력한다.
 - 가. 나라사랑교육, 병영체험 프로그램 제공
 - 나. 장병 및 가족들의 학위취득 권장 및 여건 보장
 - 다. 직장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항
 - 라. 각종 행사시 특공무술 시범 지원 등 상호교류

제4조(법령준수)

양 기관은 본 협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군사보안 및 보안관련 현행 법령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,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 다만, 상대 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외부에 공개가 가능하다.

제6조(효력발생 및 협약기간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
본 협약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,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각 대표자가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2. 7. 3.



총장 홍덕률

홍 덕 류



제8919부대장

준장 구본홍

구본홍



보육시설 위탁운영 약정서



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육군 제 8919부대 직장보육시설(이하 무학마을 “어린이집” 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8919부대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는 대구대학교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에게 운영을 위탁(영유아보호법 제 24조 제3항)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, 약정체결의 증명 및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약정은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탁시설) “갑”은 다음 시설의 운영을 “을”에게 위탁하게 한다.

- ① 시설명 : 무학마을 어린이집
- ② 시설위치 : 경북 경산시 하양읍 무학로 64-7 무학마을
- ③ 시설규모 : 188.759m²
- ④ 보육정원 : 43명

제3조(위탁기간)

- ① 위탁기간은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.
- ② “을”은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이전에 “갑”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“갑”은 어린이집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“을”의 위탁운영을 연장시킬 수 있다. 재위탁 기간은 3년이며 “을”이 또 다시 재위탁을 희망한다면 재위탁 종료 90일 이전에 “갑”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, 변경,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보육대상)

- ① 제 8919부대 지역에 근무하는 육군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 중 취학 전 (만6세 미만)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기타 보육대상 및 우선순위는 어린이집 운영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5조(운영방법 및 보육내용)

- ① “을”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, 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“을”은 보육아동에 대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“을”은 운영자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“갑”은 “을”과 운영관리에 협의된 지원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⑤ “갑”과 “을”은 운영방법과 운영내용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예규에서 정하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다.

제6조(보육료 등)

- ① “을”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육료를 정부 지원단가 기준으로 징수한다.
- ② “을”은 보육료 이외의 비용을 징수할 경우 “갑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보육시간)

- ① 보육시간은 평일 07:30~19:30으로 하고, 평일 연장보육은 22:00까지 한다. 다만, 육군의 하·동절기 근무시간, 훈련 등의 부대사정으로 보육시간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하여 “갑”이 요청할 경우 “을”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②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원한다. 다만, “갑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“갑”이 “을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③ 아동 보육 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, 보육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“을”은 반드시 “갑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종사자 임면)

- ① “을”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, 기타 종사자로 임면하여야 한다.
- ② 어린이집 종사자는 “을”이 임면하되, 원장,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를 임면시 “갑”이 선정위원으로 참석하고 그 결과를 “갑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비 범위 및 부담)

- ① 운영비의 범위는 보육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.
- ② 운영비는 아동의 보호자가 납부하는 보육료와 “갑”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- ③ “갑”的 보조금은 정부보조금 범위내에서 지원하며, 운영예산은 “을”이 계획하여 “갑”과 상호협의하 집행한다.

제10조(운영비 관리)

- ① “을”은 운영비의 정확한 예산집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 안내에 규정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② “을”은 제1항의 각종 장부와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1조(급식) 보육아동에게 공급되는 모든 식자재는 원산지가 표기된 국산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.

제12조(시설관리)

- ① “을”은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.
- ② “을”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를 제외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 보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.
- ③ “을”은 “갑”的 승인 없이 시설을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위탁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,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- ④ “을”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, 관련법규 및 “갑”的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(비품 인수인계)

- ① “을”은 최초 설치된 비품에 대하여 시설관리 업체(군인공제 ENC)와 비품 인수인계 한다.
- ② “을”은 “갑”이 제공한 비품에 대하여 별도 비품 인수인계를 하고, 인수받은 비품에 대하여 비품대장에 등록사용하며, 비품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.

제14조(안전관리)

- ① “을”은 아동의 신체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근 병원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“을”은 아동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, 산재보험 및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“을”이 부담한다.

제15조(예산회계)

- ①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상의 정부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- ②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,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예산내용과 산출기초를 명백히 표기하여야 한다.
- ③ 세입과 세출은 건전한 내용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“을”은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결산서를 “갑”이 요구한 기한내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서식 및 작성방법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한다.

제16조(어린이집 운영 조력) 어린이집 시설이 인가 및 운영될 때까지 “을”은 어린이집 인가 및 운영과 관련한 “갑”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조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(감독)

- ① “갑”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, 사업장 규정에 의거 운영실태 확인점검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할 수 있으며 “을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“을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“갑”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“갑”이 지정한 기한내,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서면으로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약정의 해지)

- ① “갑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.
- 1) “을”이 영유아보호법, 동시행령, 동 시행규칙 및 아동복지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 - 2) “갑”의 정당한 지시 감독 사항을 “을”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
 - 3) “을”이 각종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
 - 4) “갑” 또는 “을”의 사정에 의거 상호 협약이 있었을 경우
- ② “을”은 “갑”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
- ③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약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90일 이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
- ④ 약정이 해지된 때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속하는 시설물 및 기타재산을 지체없이 “갑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
제19조(약정의 해석)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012년 월 일



제 8919부 대장

위탁운영자 “갑”

준장 구본홍

구본홍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수탁운영자 “을”

총장 홍덕률

홍덕률